



Social Security

귀하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www.socialsecurity.gov

귀하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사회보장국은 귀하가 자격이 되는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확실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수혜 자격과 귀하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저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항소를 제기하신 경우, 저희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사항을 재검토합니다. 저희 결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 결정을 수정할 것입니다.

항소는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결정사항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단계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
- 심리;
- 항소 위원회의 재검토; 및
- 연방 법원.

언제 항소할 수 있나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결정사항을 알리는 서신을 받으신 후 60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 기일 후에 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없는 한, 저희는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귀하가 이 서신을 받았다고 간주합니다.

60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 권리는 소멸되며 저희의 마지막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사례가 재심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한 시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통해 저희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마지막 날로 합니다.

항소하는 방법

항소 신청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항소 요청 양식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는 귀하의 사례에 대한 결정에 항소한다는 설명과 함께,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된 서한을 사회보장국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장애 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의학적 이유로 인해 거절되었다면, 저희 웹 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appeal에 서 항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권

귀하의 항소를 돕거나 대리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리인은 변호사나 귀하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귀하의 대리인과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대리인은 대부분의 사회보장 문제에 있어 귀하를 대변할 것이며, 귀하 신청에 관한 저희 결정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먼저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귀하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대리인 선임권 (간행물 번호 05-10075) 을 신청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심

재심은 첫 번째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회보장국(장애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인 경우, 주 장애등급결정국) 담당자에 의해 귀하의 신청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 담당자는 원래의 결정에 사용된 모든 증거와 함께 새로이 추가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재심 후 결정을 내리면, 이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심리

재심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원래의 결정과 재심에 관여하지 않았던 행정법 판사가 실시합니다.

심리는 대개 귀하의 거주지에서 75 마일 이내의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심리의 시간과 장소를 귀하께 통지할 것입니다.

심리에 앞서, 저희는 귀하께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귀하의 서류상의 정보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리 장소에서, 행정법 판사가 귀하와 귀하의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증인, 즉 의료 또는 직업 전문가 역시 심리에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심리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 회의를 통해 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화상 회의로 심리에 참가하는 것이 귀하께 더욱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직접 출두하는 것보다 심리 화상 회의일 경우 일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화상 회의 장소는

귀하의 맥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나 다른 동행인을 동반하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 대개 귀하께 유리합니다(직접 또는 화상 회의로). 귀하와, 법적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적 대리인은 심의에 참여하여 귀하의 사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에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저희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셔야만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귀하가 출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출두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심리에 참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귀하를 위해 심리의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리 후에, 판사는 귀하가 새로 제시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에 대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편지와 행정법 판사의 결정서를 보내드립니다.

항소 위원회의 재검토

행정법 판사의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회보장국의 항소 위원회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는 모든 재검토 요청을 검토하지만, 심리 판결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 재검토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가 귀하의 사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에서 직접 귀하의 사례에 직접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법 판사에게 본 사례를 되돌려 보내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항소 위원회가 재검토를 기각할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항소 위원회가 직접 귀하의 사례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서 사본을 발송해 드립니다. 항소 위원회가 귀하의 사례를 행정법 판사에게 되돌려 보낼 경우, 명령서 사본과 서한을 발송해 드립니다.

연방 법원

항소 위원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항소 위원회가 귀하의 사례를 기각했을 경우, 연방지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저희가 발송한 서한에는 어떻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에 문의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우리 간행물 사본을 찾으려면 우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십시오(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경우에는 우리의 TTY 번호인 1-800-325-0778로 전화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통화를 기밀로 취급합니다. 스페인어를 말하는 경우 2를 누르십시오. 기타 모든 언어의 경우 1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영어 음성 자동 안내 후 직원이 대답합니다. 직원이 귀하의 통화를 도울 통역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특정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 전화 서비스에 의해 영어로 하루 24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 보장
사무국에서는 일부 전화를 선정하여
통화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Publication No. 05-10058-KOR

Your Right To Question The Decision

Made On Your Claim (Korean)

January 2011